

애경케미칼 주식회사 이사회 규정

목 차

1. 총 칙
2. 구 성
3. 회 의
4. 부 의 사 항
5. 위 임
6. 기 타 사 항

부 칙

제1장 총 칙

제 1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애경케미칼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.)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범위)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조 (권 한)

1.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2.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3.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4. 전3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장 구 성

제 4조 (구 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독립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 5조 (의 장)

1.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이사(소집권자)로 한다.
2. 의장이 유고 등 정당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순위의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미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순서로 해당 직위의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 위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이 모두 곤란한 경우에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.

제 6조 (이사 아닌 자의 출석)
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할 수

있다.

제3장 회 의

제 7조 (종 류)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2.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으로 한다.
3.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8조 (이사회 의 소 집)

1.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
다만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2.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있다.
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9조 (결 의 방 법)

1. 이사회 의 결 의 는 이사 과 반 수 의 출 석 과 출 석 이 사 의 과 반 수 로 한 다.
단, 상 법 제 397 조 의 2 (회 사 의 기 회 및 자 산 의 유 용 금 지) 및 상 법 제 398 조 (이 사 등 과 회 사 간 의 거 래) 에 대 한 이 사 회 결 의 는 이 사 3 분 의 2 이 상 의 수 로 한 다.
2.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3. 이사회 의 결 의 에 관 하 여 특 별 한 이 해 관 계 가 있 는 이 사 는 의 결 권 을 행 사 하 지 못 한 다.
4. 전 3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의 결 권 을 행 사 할 수 없 는 이 사 는 출 석 이 사 의 의 결 권 의 수 에 산 입 하 지 아 니 한 다.

제 10조 (질 서 유 지)

1. 이사회 의 의 장 은 이 사 회 에 서 고 의 로 의 사 진 행 을 방 해 하 기 위 한 언 동 을 하 거 나 질 서 를 문 란 케 하 는 자 에 대 하 여 그 발 언 의 정 지, 최 소 또 는 퇴 장 을 명 할 수 있 으 며, 그 명 을 받 은 자 는 이 에 응 하 여 야 한 다.
2. 이사회 의 의 장 은 의 사 진 행 의 원 활 을 기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이 사 의

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4장 부의사항

제 11조 (부의사항)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4) 재무제표의 승인 (단,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승인함)
- (5) 정관의 변경
- (6) 자본의 감소
- (7)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- (9)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10) 회사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1) 이사, 감사(또는 감사위원회 위원)의 선임 및 해임
- (12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3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4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 (단,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함)
- (15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6) 이사·감사의 보수 (단,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의 한도 내 각 이사별 보수의 결정 및 관련 세부사항은 그룹 임원인사위원회에 위임함.)
- (17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)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자회사(공정거래법에 따른 자회사에 한함)의 설립, 편입, 제외
 - (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3) 등기이사 중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
 - (4) 공동대표의 결정
 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- (6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(단, 감사위원회 결의는 제외)
 - (8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- (9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
 - (10) 지점, 공장, 연구소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- (11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
 - (12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3) 재무에 관한 사항 (자기자본 및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,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)
- (1) 건당 자산총액의 5%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(유/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포함하나, 단순 자금운용 등을 위한 금융자산 등의 취득은 제외한다.)
 - (2) 건당 자기자본의 2.5% 이상의 계약의 체결
(계속적 계약인 경우 1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)
 - (3) 건당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차입금의 증가
(회사의 차입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, 기존차입금의 연장이나 대환(동일 금융기관내 차입과목 변경 또는 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한 상환을 포함함)은 차입금 총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제외함)
 - (4) 건당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, 담보제공, 채무인수, 채무면제, 증여
 - (5) 신주의 발행
 - (6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위임
 - (7) 준비금의 자본전입
 - (8)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- (9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
- (10) 자기주식의 소각
- (11) 자산재평가의 실시
- 4) 이사 등에 관한 사항
 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**
- 5) 기타
 - 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- (2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
 - (3)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- (4)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
- 6) 상법, 기타법령(규정·지침 등 포함) 및 정관,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부의사항(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포함한다)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, 단순 사무 또는 금융기관과의 여신약정 및 차입약정의 연장이나 대환(동일 금융기관 내 차입과목 변경 또는 타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한 상환을 포함함)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한다.
- 7) ESG와 관련한 중요 사항
 - (1) ESG 전략 및 정책 제정에 관한 사항
 - (2) ESG 활동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항
 - (3)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관한 사항

제 12조 (보고사항)

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
- 2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- 3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- 4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3조 (책임감경)

- 1.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

- 6배(독립이사의 경우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2.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겸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장 위 임

제 14조 (위 임)

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, 본 규정에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6장 기타사항

제 15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1.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2.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)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)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)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3.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4.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5.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6조 (관계인 및 전문가 자문)

1. 독립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 17조 (의사록)

1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2.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8조 (간 사)

1. 이사회에는 간사를 두고, 이사회 의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2.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 19조 (규정의 개·폐)

이 규정의 개·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4조 및 제13조,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